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51호 2025.10.21.(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2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2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22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삭제
 - 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 제4장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항제3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경제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3262, 팩스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은 상품권 발행 초기 예측할 수 없는 수요와 정책에 대응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자 설치·운영하였으나, 기금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고 사업이 안정화되어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기금 운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 삭제 (제12조~제20조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삭제 (제21조제2항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u> <u>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u></p>	<p><u><삭 제></u></p>
<p><u>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u>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u> <u>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u> <u>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u> 	<p><u><삭 제></u></p>
<p><u>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u> <u>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u> <u>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u> <u>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u> 	<p><u><삭 제></u></p>

-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삭 제>

② 기금은 구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 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

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삭 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

<삭 제>

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

<삭 제>

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삭 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2. (생략)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 (생략)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2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6.25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층 총무과

- 전 화 : ☎ (032)560-4094 FAX (032)560-271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6.25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에 9천6백만원 추가 반영되었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2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u>2만원</u>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① ----- ----- ----- ----- ----- -.</p> <p>1.----- ----- ----- ----- <u>7만원</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1997년 개장하여 노후화된 사계절썰매장이 운영이 중단(' 20. 1. 30.)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2,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1997년 개장하여 노후화된 사계절썰매장이 운영이 중단('20. 1. 30.)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2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

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2,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